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3월 30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4월 3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4월 10일

제2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권 순 서

나. 제안이유

-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 사업으로 주민소득지원 기금이 운영되었으나, 융자실적 저조, 유사사업 중복 지원 등 사업 본래의 취지와 존치목적이 상실되어 사업을 폐지하고,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의 폐지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예산조치 :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귀속하고 상환중인 융자금 및 이자는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및 세무과와 합의되었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근 도

○ 본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의 본래 취지와 준치 목적을 상실하여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로 귀속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